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삭제 및 추가 -

기업의 산업기술 연구개발 촉진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37조 제4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에서 산업계의 건의를 수렴하여 일부 품목을 제외 및 추가 입법 예고함에 따라 관련 내용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 개정 이유

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 기술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산업기술연구개발용 물품, 시약, 건본품 등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기업의 연구 및 투자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세감면(감면율 80%) 대상 물품을 새롭게 지정하고자 함이며, 현행 46개 관세감면(80%) 대상에서 밀폐 전동기식 펌프, 온도습도시험기, 저산소 클린오븐 등 18개 품목을 제외하고, 듀얼 집속 이온빔 공작기, 압출기, 성형기 등 18개 품목을 추가하여 총 46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II. 주요 개정 내용

1. 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관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2)

- 별표1의2[법 제90조제1항 제4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제37조제4항 제1호 관련)]에서 연구개발용 물품 46개를 관세감면 대상으로 선정.

연번	관세율표 번호		품명	규격
	호	소호		
1	8419	60	냉각기	영하 35도(°C) 이하로 냉각·냉동 또는 액화할 수 있는 것
	8419	89		
2	8419	89	열충격시험기 (Temperature Shock Test Chamber)	평판디스플레이, 인쇄회로기판, 반도체소자 또는 반도체모듈의 성능을 시험하는 것으로서, 설정할 수 있는 최고 온도가 영상 100도(°C) 이상이고 최저온도가 영하 40도(°C) 이하인 것
3	8421	39	포집기	유량과 희석비율의 통합 값을 기반으로 입자상 물질(particulate matter)의 질량을 계산하고 저장할 수 있는 것
	8479	89		

* 이하 전체 감면대상 및 내용은 붙임파일 참조

III. 의견제출

1. 제출방법

- 기획재정부에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2. 제출처

-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xrozw@korea.kr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세제도과
- Fax : 044-215-8075
- 전화 : 044-215-4413

3. 제출기한

- 2022년 7월 21일

I 첨부 파일 (아래 파일명 클릭 시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Contact



유다예 관세사

T 070-4353-1588
E dyyoo@esein.co.kr



안성호 관세사

T 070-4353-1529
E shahn@esein.co.kr



| 세인 홈페이지 | Newsletter 더보기 | 구독신청 |

세인관세법인의 뉴스레터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인관세법인의 홈페이지 또는 위의 컨설턴트에게 연락하시어 확인 바랍니다.

The newsletter of SEIN Customs & Auditing Corp. is published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general information and does not include any official views or legal opinions. For more details, please check our website or contact the consultants mentioned above.

Copyright 2022 SEIN Customs & Auditing corp. All rights reserved.